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9월 10일(화)

담당 조현수(

페이지

총 11매

제목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추석연휴 농성투쟁

관악구 한부모 가정 탈북민 어머니와 장애인 아들 아사(餓死)

관악구 50대 장애인 고독사(孤獨死)

강서구 80대 노모와 50대 중증장애인 아들 피살

굶어 죽고, 혼자 죽고, 맞아 죽게 만드는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 촉구!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추석연휴 농성투쟁**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추석연휴 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9월 10일(화) 오후 5시. 서울역 대합실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희생자 합동추모제

○ 일시, 장소 : 2019년 9월 10일(화) 오후 7시. 서울역 대합실

※ 합동추모제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을 촉구하며 1박 노숙농성에 돌입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이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많은 이들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보낼 연휴로 들떠있지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임기 절반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한 채 ‘굶어 죽고, 혼자 죽고, 맞아 죽는’ 참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 7. 31. 관악구 한부모 가정 탈북민 어머니와 장애인 아들 아사(餓死) 후 두 달 여 지나 발견
2019. 8. 20. 관악구 50대 장애인 고독사(孤獨死) 후 2주 지나 발견
2018. 9. 1. 강서구 80대 노모와 50대 중증장애인 아들 피살

4.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고 문재인정부 스스로 자평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빈곤문제 1호 과제이자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무늬만 바뀐 채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에 불과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허울(실속이 없는 겉모양)뿐인 포용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문재인정부는 2020년 보건복지부 정부예산안 편성에 대해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가 방향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연이은 죽음에 대해 지난 9월 5일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6.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지 못 해 희생된, 마치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인냥 ‘복지 위기가구’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대다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삶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관악구 모자와 고독사한 장애인, 그리고 강서구 모자의 경우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몰라서 참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보장 제도와 복잡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수급신청 과정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입니다.

7. 전장연은 올해 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통해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당 차원의 TF 구성을 요구하였고, 지난 6월 ‘맞춤형 복지 TF’가 구성되고 장애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정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2020년 예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TF 차원의 발표

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TF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자연증가분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복지 예산이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8. 이에 전장연은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10일 오후 5시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떠나는 서울역 대합실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죽어간 죽음들을 귀성객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1일 오전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귀성인사에 맞춰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 메시지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h2 style="margin: 0;">허울뿐인 장애인복지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추석연휴 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h2>	
○ 일시, 장소 : 2019년 9월 10일(화) 오후 5시. 서울역 대합실 사회: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	
1. 여는 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투쟁 발언	강희석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상임활동가)
3. 투쟁 발언	정성철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상임활동가)
4. 투쟁 발언	달자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5. 투쟁 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6. 닫는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p>주요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장애인연금’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 쟁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조작 방지 및 활동지원 24시간·주간활동 8시간 쟁취 -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1. 배경 및 근거

-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는 정부의 설명처럼 장애인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함. 특히 정부도 강조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 한다는 것임.
- ‘수요자 중심의 지원’은 기존의 장애인정책이 시설에 대한 지원과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의미임.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임.
-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개인맞춤형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그리고 2019년부터 시행된 ‘주간활동지원’을 꼽을 수 있음. 특히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의학적 심사에 기반한 장애등급제에 의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정책들임.
- 31년만의 변화가 시작된 이듬해인 2020년 장애인복지예산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개인맞춤형 정책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의 예산 확대가 필요함.

2. 세부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코드명)	' 19년 예산	' 20년 정부안 (A)	' 20년 예산요구안 (B)	증액 요구액 (B-A)	요구 내역 (' 19년 대비 요구)
장애인 연금 (1531-305)	719,735	786,181	1,259,735	473,5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 1급,2급,중복3급(36만3천명) → 3급까지 확대(64만7천명) *2020 정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 증액(30만원) -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수급자 포함
장애인 활동지 원 (1535-304)	1,003,461	1,275,172	1,998,342	723,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000명 → 100,000명 ○ 월평균시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9.8시간/월 → 150시간/월 ○ 수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960원 → 16,570원 *2020 정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원: 81,000명->90,000명(9,000명 증원) -단가: 12,960원->13,350원(390원 인상) -시간: 109.8시간 -> 127시간
발달 장애인 지원 (1535-309) 주간활 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	19,549	37,782	175,854	138,072	<p>[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0명 → 10,000명 ○ 월평균시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시간/월 → 132시간/월 ○ 수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960원 → 16,570원 *2020 정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4천명 / 단가 13,350원 - 월평균시간 동일
	9,169	33,059	117,236	84,177	<p>[아동 및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바우처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명 → 10,000명 ○ 월평균시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시간/월 → 88시간/월 ○ 수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960원 → 16,570원 *2020 정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7천명 / 단가 13,350원 - 월평균시간 동일

1. 배경 및 근거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첫 단계로 ‘활동지원, 주간활동, 거주시설 입소, 보조기기, 응급안전’의 5가지 정책을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수급여부 및 수급 양을 판정하는 도구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2018년 9월 장애인단체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이후 지난 4월에 설명회 자리를 통해서 현재 내용이 공개됨.
-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겠다고 함.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기존 ‘인정조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능제한 중심의 평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환경적 필요와 장애영역별·유형별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기능제한 평가 총점 532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난해 9월 공개된 문항별 점수 배점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점수 배점이 달라지면서 장애유형별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특히 정부가 강조한 “최중증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 한다는 하루 16.16시간은 ‘인지행동특성’과 ‘기능제한’ 영역 모두 해당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독거 최중증장애인’ 이어야 받을 수 있는 시간임.
-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복지부가 모의적용한 588명 중에 몇 명이나 해당되었는지에 대해서 복지부는 답변을 못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독거 와상장애인이 한 달 330시간의 서비스 수급밖에 받지 못 하는 피해 사례가 청원으로 올라오기도 하는 등 장애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 지원할 수 있는 판정체계가 되어야 하며, 점수를 조작하면서 정부 예산을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됨. 최종증독거장애인의 하루 24시간 보장이 가능하고, 필요한만큼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개선해야 함.

2. 세부 요구사항

- 최종증독거장애인의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
- 종합점수 465점 이상의 활동지원등급 1구간 하향 조정 및 현실화
- 장애유형별·영역별 특성 문항의 별도 배점화
- 사회·환경적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 강화

1. 배경 및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관련 법률의 제1조(목적)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최종중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생존권적 권리이며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해 필수적 서비스임.
- 하지만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게 되는 경우 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아야 함. 이로 인해 하루 약 14시간을 받던 최종중독거장애인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경우 하루 4시간의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때인 2011년 11월 당시 지침에서는 신청자격을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도래하였으나,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로 규정했음. 하지만 1년여만인 2013년 이후 신청자격에 대한 지침이 “만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장애인”으로 변경시키면서 사실상 노인장기요양으로의 전환을 강제화시킴.
- 그 결과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만65세 도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인원이 연간 400명에 이르는 결과로 나타남.

[표] 최근 5년간 65세 도달 수급자 및 장기요양급여 전환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활동지원수급자 중 65세 도달자	774	737	708	1,079	1,025
활동지원급여 수급 지속	357	360	355	599	662
노인장기요양 급여 전환	417	377	353	480	363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런 가운데 8년 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최종증지체장애인 송용현(탈시설자립생활 당사자) 씨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짐.(출처: 비마이너/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받던 사지마비 장애인, 만65세 됐다고 ‘하루4시간’ 으로 삭감?”)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최종증장애인에게 ‘만65세 연령제한’ 은 마치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던 ‘고려장’ 과 다를 바 없는 제도가 만든 폭력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를 수급받던 최종증장애인에게 ‘제도간 형평성’ 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으로 강제전환시키는 것은 장애인으로서의 특성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비장애노인’ 이 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정책임. ‘현대판 고려장’ 이라고 불리는 만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활동지원’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세부 요구사항

○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를 위한 법 개정 및 예산 반영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현황>

정당	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정의당	윤소하의원	16.12.29	65세 이상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	17.06.16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	19.02.25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	19.04.15	65세 미만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 김명연의원 발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201907)를 재구성함.

※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시 예산 추이

1) 만65세 연령제한 폐지에 대한 예산 추계 (출처:국회예산정책처 20190321)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65세 이상의 활동지원급여 선택 (안 제5조의2)	4,934	5,633	6,424	7,318	8,329	32,637	6,527
국비	3,306	3,774	4,304	4,903	5,580	21,867	4,373
지방비	1,628	1,859	2,120	2,415	2,749	10,770	2,154

주: 1. 국비 및 지방비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업의 국고 보조율 67% 적용하여 산출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5조의2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할 수 있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 49억 3,400만원, 2024년 83억 2,900만원 등 5년간 총 326억 3,700만원(연평균 65억 2,700만원)으로 추계됨

2) 만65세 연령제한 폐지에 대한 예산 추계 (출처:김명연의원 발의 장애인활동지원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 20190700) / *보건복지부가 검토한 예산 추이임.

가. 65세 도래 수급자의 50%가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하는 경우 추가 재정 소요

<65세 도래 수급자의 50%가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65세 도래 수급자의 50% 활동지원 급여 선택시(단위: 백만원)	38,112	43,202	48,556	54,183	60,091	244,144	48,829
대상자수	1,984	2,183	2,383	2,582	2,782	-	-
서비스단가(단위: 원)	13,340	13,740	14,150	14,570	15,000	-	-

*주: 1. 대상자수는 2019년까지 누적 장기요양급여 전환자(3,968명)에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한 평균 인원(399명)을 증가분으로 적용하고, 여기에 100분의 50을 계산한 인원임.

2. 비용추계는 120시간(월평균이용시간) × 대상자수 × 서비스단가 × 12월로 함.

3. 서비스단가는 '19년 단가(12,960원) 기준으로 물가상승률(3%)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나. 65세 도래 수급자의 50%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비용 추계

<65세 도래 수급자의 50%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비용추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장기요양급여 선택 시 (단위:백만원)	31,713	35,941	40,411	45,099	50,050	203,214	40,643
대상자수	1,984	2,183	2,383	2,582	2,782	-	-
장기요양 월 평균 급여액	1,332천원	1,372천원	1,414천원	1,456천원	1,500천원	-	-

*주: 장기요양급여(재가+시설) 재정 추계는 대상자 수 × 장기요양 월 평균 급여액 × 12월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